

UNCITRAL 모델법이 독일 중재법개정에 미친 영향

鄭仙珠*

- I. 들어가며
- II.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 1. 수용결정
 - 2. 수용형태
- III. 모델법과 개정안의 비교
- IV. 독일 중재법의 독자성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法學博士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일부 내용임

I. 들어가며

그 동안 UN에서는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중재현실과 각국의 중재법사이의 조화문제를 인식하여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UN협약(1958년), UNCITRAL중재규칙(1976년) 등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행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중재법은 이러한 국제기구차원의 움직임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한 채 낙후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에 1978년 UN 국제상사법 위원회는 각국의 국내중재법과의 조화를 위해 모델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전문가들로 소연구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5년 유엔 총회에서 모델법안이 의결되어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自國의 중재법을 개정할 때 UNCITRAL모델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UNCITRAL모델법 제정 이후 독일 내에서도 모델법을 수용하여 독일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처음에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중재에 관해 자유로운 독일중재법의 규정내용으로 인해 굳이 모델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본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려는 독일 법학자들의 신중함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추세가 점점 모델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독일 내에서도 국제중재현실에서 독일이 소외될 것을 우려하면서, 모델법을 수용하여 독일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세계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중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중재법개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9명의 위원이 UNCITRAL모델법, UNCITRAL중재규칙,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개정법, ICC중재규칙과 독일중재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Schiedsgerichtswesen)¹⁾의 중재규칙 등을 참고로 하여 2년 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1994년 2월 仲裁法改正案을 작성하여 연방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연방 법무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1996년 3월 연방의회에 중재법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금년 내로 곧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독일중재연구소와 독일중재위원회(Der Deutsche Ausschuß für Schiedsgerichtswesen)는 1992년 1월 1일자로 독일중재협회(Deutsche Institution für Schiedsgerichtsbarkeit)로 통합되었다

II.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1. 수용결정

연방 법무부에 의해 성립된 위원회의 임무는 국제중재절차 및 국내중재절차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事由에 근거하여 모델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²⁾ 우선 모델법이 전세계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델법을 채택하는 경우 독일의 중재법규정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이 형성되어 독일이 국제중재지로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모델법은 그 체계면에서 거의 완벽할 뿐 아니라 중재절차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재조항이 허술하게 작성된 중재계약의 경우에도 모델법이 적용된다면 원활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몇몇 점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모델법의 내용이 기존 독일의 중재법과 근본적으로 상이하거나 독일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중재제도의 본질과 일치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델법을 수용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2. 수용형태

(1) 國際仲裁 및 國內仲裁, 商事仲裁 및 一般仲裁를 구분하지 않은 통일적인 法案

위원회에서는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하자는 데 대해 異見은 없었으나 그 수용형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모델법이 유엔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가 國際商事仲裁의 표준법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었다.

2)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ommissionsbericht zur Neuordnung des Schiedsverfahrensrechts. 1994 참조

우선 “商事”의 개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상사중재절차에 관한 모델법의 내용을 일반중재절차에 확대적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다. 모델법은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商事라는 용어를 商事의 성질을 가진 모든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의 법률관계이거나 아니거나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商事의 성질을 가진 법률관계의 예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처럼 모델법의 商行為개념은 독일 상법상의 商行為개념보다 훨씬 넓은 뿐 아니라, 오늘날 독일에서도 이미 상법을 상인간에만 적용하려는 전통적인 한계설정이 너무 협소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모델법이 국제상사중재절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중재절차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논의 중에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을 특별법으로서 독일국내법에 수용하여 국제중재절차에 적용하고, 기존의 민사소송법내의 중재규정은 국내중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구분하여 국제중재절차를 위해서는 모델법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민사소송법에 수용하고, 국내중재절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案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내분쟁과 국제분쟁에 대한 통일적인 중재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국내중재절차와 국제중재절차, 商事중재절차와 일반중재절차로 나누게 되면 서로 다른 법체계로 인해 적용범위, 용어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두 법체계가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문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중재절차 및 국내중재절차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법규정을 마련하면 당사자를 비롯한 중재절차의 관련자들이 중재절차를 파악하기 쉬울 것이며, 이로써 법원의 재판절차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代案으로서 중재절차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물론 국제중재 및 국내중재에서 서로 달리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예컨대 仲裁判定의 방식이나 기간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별도의 章을 만들어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별도의 章을 만들어 따로 규정해 두는 경우에는 입법자뿐 아니라 법원 기타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중재절차 및 국내중재절차를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

여 위원회는 모델법보다 그 적용범위를 넓혀 국제- 및 국내중재절차, 상사중재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고 모든 중재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法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 가능한 한 모델법을 그대로 수용

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델법의 개별규정내용을 그대로 독일법에 수용하려고 하였다. 특히 모델법의 내용이 독일법에 생소하거나 상이한 것일지라도 법의 통일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려고 하였다. 이는 모델법이 그 내용과 체계면에서 우수할 뿐 아니라, 중재절차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중재절차에 관해 제대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델법을 적용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중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델법은 기존의 민사소송법 중재편에 비해 중재인의 選任과 忌避(제11조, 제13조), 仲裁判定部の 관할권(제16조)과 중재절차의 종료(제32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거래계약에서는 분쟁해결조항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당사자로 하여금 독일을 仲裁地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신뢰받을 수 있는 중재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모델법의 내용은 국가간 조약에 의해 확정된 내용 및 현대 국제소송절차규정에 나타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독일 중재법의 기본적인 내용과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델법을 가능한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위원회의 입장은 연방법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仲裁法改正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III. 모델법과 개정안의 비교³⁾

독일 중재법 개정안이 대체로 모델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고

3) 개정안과 독일 현행중재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 선주, 독일의 중재법 개정안에 관하여, 중재학회지 제6권(1996), 131면 이하 참조

있으나, 몇몇 점에 있어서는 모델법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법원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모델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절차의 비용은 모든 중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일 뿐 아니라 비용분배원칙에 대해 실용가능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아 중재비용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 모델법 제1조(적용범위)

모델법 제1조의 내용은 개정안 제1025조와 제1030조에 반영되어 있다.

개정안은 모델법의 엄격한 屬地主義原則에 따르고 있으나 이 원칙은 국내중재절차에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중재절차가 행해질 때에도 법원의 不適法却下判決, 보전처분명령과 증거조사 및 기타 법원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독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특히 제1025조 3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델법 제정시에도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지만, 改正案은 엄격한 屬地主義를 채택하는 경우 법적 명확성을 위해 국내중재절차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 명시하고 있다.

중재의 대상과 관련하여 모델법(제1조 5항)은 각 국가의 다른 법에서 仲裁適格性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모델법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모델법은 모델법을 수용한 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해서만 중재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제1030조는 모델법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모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대차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중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임대차사건에 대해서도 중재를 인정한다면 법원의 전속적 관할규정을 통해 貫入者를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델법 제2조(개념정의와 해석원칙)

개정안은 모델법 제2조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제2조가 부분적으로 너무나 당연시되는 내용(a, d, e)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중재합의에서 언급한 仲裁判定部の 규정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된다는 e는 당사자주의의 당

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모델법 제2조의 내용 중 부분적으로 다른 규정의 내용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곳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b는 제1029조 1항과 f는 제1046조 3항의 내용과 가깝기 때문에 그 곳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의 내용은 독일법에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3) 모델법 제3조(문서의 수령)

개정안은 제1028조에서 문서의 수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델법과는 달리 수취인의 주소불명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모델법은 제3조 (1) (a)에서 문서가 수취인에게 직접 교부되었거나 居所, 우편용 주소에서 인도되었을 경우에는 수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취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 당연히 수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델법에서처럼 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모델법 제4조(責問權의 拋棄)

개정안은 제1027조에서 責問權의 喪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027조는 부분적으로는 모델법을, 또 한편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95조를 따르고 있다. 모델법에서는 責問權拋棄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認知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은 절차의 하자에 대한 認知여부에 관해 생길 수 있는 지리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295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認知를 責問權喪失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5) 모델법 제5조(법원의 간섭범위)

법원이 광범위하게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영미법과는 달리 법원의 관여 가능성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고 있는 모델법 제5조의 내용은 독일법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개정안 제1026조는 모델법 제5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모델법은 각 국가에서 모델법을 수용할 때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법

원의 관할을 확대 내지 제한하는 것을 배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도 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였다. 즉 개정안은 仲裁判定部가 구성되기 전까지 중재절차의 適法여부에 대한 확인청구(개정안 제1032조 2항), 중재인의 선임(개정안 제1034조 2항)과 중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의 광범위한 지원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6) 모델법 제6조(중재협조 및 감독기능을 위한 법원 및 기타 당국)

모델법 제6조는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것인데, 개정안은 제1062조에서 모델법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7) 모델법 제7조(중재합의의 개념정의와 방식)

개정안은 중재합의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제1029조에,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해서는 제10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29조가 모델법 제7조 1항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데 비해,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한 제1031조는 모델법 제7조 2항에 비해 좀 더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31조 1항과 3항은 모델법 제7조 2항을 받아들인 것이며, 2항과 4항은 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며, 5항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이고 6항은 5항과 관련된 일반규정이다.

개정안 제1031조 2항은 모델법의 내용을 넘어서 방식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즉 일방당사자의 침묵을 서면으로 행해진 중재체결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중재합의에 대해 서면방식을 요구하는 1항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특히 상인간에 청약서면에 대한 침묵을 承諾으로 간주하는 독일법 및 기타 외국법상의 법률행위적 의미를 고려한 것이었다.

개정안 제1031조 3항은 商去來에서 일반화된 관행, 즉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約款을 언급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재합의에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을 계약상 언급하는 것으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중재합의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재합의가 약관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해서는 안된다 개정안 제1031조 4항은 해상법에서 중요한 船荷證券에 관한 것이다. 일

반적으로 船荷證券에는 傭船契約의 조건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조건 속에 보통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船荷證券에 명문으로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傭船契約에 포함된 중재조항을 지시하는 합병조항(Inkorporationsklausel)이 船荷證券에 명시되어 있으면, 운송인이 船荷證券을 제3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중재합의가 체결될 수 있다.

개정안 제1031조 5항은 1항 내지 4항의 방식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자가 당사자인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의해 중재합의가 행해져야 하며, 또 그 문서에는 중재절차에 관한 내용 이외의 것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公證證書의 경우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데, 공증인은 관련당사자에게 공증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행위의 법률적 범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체결사실과 그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8) 모델법 제8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直訴)

중재합의의 대상이 된 분쟁에 대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모델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중재절차로의 移送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법의 내용에 대해 중재법개정위원회에서는 비판이 가해졌다. 즉 모델법에 따른 경우 실제로 법원이 당사자들을 어떻게 중재절차로 회부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仲裁判定部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때문에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개정안 제1032조 1항에서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그 訴를 不適法한 것으로 却下시켜야 하며,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실행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분쟁해결을 속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 제1032조 2항은 仲裁判定部가 성립되기 전까지 법원에 대해 중재절차의 適否確認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델법에 없는 내용이다. 仲裁判定部가 설치된 이후에는 仲裁判定部の 관할권 없음이나 관할권의 범위초월에 대해서 仲裁判定部에서 주장될 수 있다.

(9) 모델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의 임시적 조치)

仲裁判定의 분쟁해결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임시적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중재합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모델법 제9조의 내용은 개정안 제1033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졌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법상으로도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개정안이 제1041조에서 현행법과 다수설의 입장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특히 외국당사자들이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仲裁判定部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것을 우려하여 제1033조에서 법원의 관할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1041조에서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권한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한 관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보전처분에 대한 필요성이 仲裁判定部の 구성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仲裁判定部는 보전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더라도 재량에 따라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은 보전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나아가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은 법원의 집행선고절차를 거쳐야만 집행이 가능한 반면 법원의 보전처분은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법원과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10) 모델법 제10조(중재인의 數)

仲裁判定部の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034조는 1인의 중재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과는 달리 모델법에 따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仲裁判定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상사중재에서는 3인의 仲裁判定部가 일반적인 형태이며, 또 국내중재에서도 2인보다 3인의 仲裁判定部가 可否同數의 위험이 없어 당사자의 이익보호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034조 2항은 모델법에 없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仲裁判定部の 구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 중재인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중재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직권으로 고려하여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재계약의 無效라는 결과를 인정하는

현행법보다 당사자의 이익에 더 합치하는 것이다. 법원에 대한 선임신청기간은 仲裁判定部の 구성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중재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11) 모델법 제11조(중재인의 선임)

개정안은 모델법 제11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제1035조에서 중재인의 선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國籍을 이유로 중재인의 직위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모델법 제11조 1항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 1항은 과거 동유럽국가나 중남미국가에서 자신들의 國籍을 가진 자만이 중재인이 되도록 한 제한을 부인하는 것인데, 모델법이 통과된 후 동유럽 국가에서도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중재인을 선임한 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가 중재인 선임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는 자신의 선임행위에 구속된다는 제1035조 2항의 내용은 모델법에는 없다 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절차지연을 막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중재인의 최종적인 선임시점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상소를 제한하는 모델법 제11조 5항 1문의 내용은 개정안 제106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12) 모델법 제12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개정안은 제1036조에서 모델법 제12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중재인의 기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심을 일으킬 만한 사정에 관해 중재인으로 하여금 공표하도록 의무지운 모델법 제12조 1항은 현행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보아 제1036조 1항에서 받아들였다.⁴⁾

중재인의 기피사유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법관의 기피사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은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중재인의 不公正性과 非獨立性이 기피

4)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1034조에서는 이러한 중재인의 의무를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태도는 현행법과 그 내용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당사자로 하여금 국내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따르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정안도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중재인의 공개의무나 기피사유에서의 중요한 문제들—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에게 1인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중재절차 전이나 중재절차계속 중에 행한 사회적 내지 사업상의 교류로 인해 중재인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헌을 참고로 하여 국제변호사협회에서 만든 국제중재인의 지위규정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모델법 제13조(중재인의 기피절차)

중재인의 기피절차에 관한 개정안 제1037조는 모델법 제13조와 대체로 상응한다. 개정안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기피원인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델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당해 중재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데 비해, 모델법은 제13조 2항 2문에서 기피된 중재인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법의 태도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仲裁判定部の 경우 신중하게 선정되어 구성된 仲裁判定部가 이론적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피신청된 중재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원칙은 법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에 반할 뿐 아니라 모든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기피신청된 중재인을 배제하게 되면 기피신청한 당사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기피된 중재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모델법 제14조(중재인의 不履行 또는 履行不能)

중재인의 업무수행의 不履行 내지 不可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

1038조는 모델법 제14조를 수용한 것이다. 중재인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직무가 종료된다. 물론 중재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사퇴할 수도 있으며 또한 당사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수임종료를 합의함으로써 중재인의 직무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당연히 중재인선임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효과의 문제가 뒤따른다.

(15) 모델법 제15조(중재인의 補闕)

모델법 제15조의 중재인의 補闕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 제1039조에 반영되어 있다. 중재인의 직무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선임에 적용되었던 것과 똑같은 규정에 따라 補闕仲裁人이 선임되어야 한다. 제1039조는 제1036조 내지 제1038조에 비해 중재인의 직무종료사유를 확대하였다. 즉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수임취소의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중재인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직무수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퇴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한 법에 규정된 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합의에 의해 중재인의 직무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16) 모델법 제16조(仲裁判定部の 자율적 관할결정권)

仲裁判定部の 자율적 관할결정권에 관한 개정안 제1040조는 모델법 제16조, 스위스 국제사법법 제186조 및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1052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仲裁判定部는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 재판할 수 있다. 중재합의의 유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仲裁判定部는 중재합의와 本契約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간주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히 중재조항이 本契約의 구성부분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本契約의 無效가 반드시 중재합의의 無效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本契約이 無效인 반면 중재합의는 有效한 경우 仲裁判定部는 無效인 本契約에 기한 再清算請求權(Rückabwicklungsanspruch)을 재판하여야 한다.⁵⁾

仲裁判定部の 관할권이 없다는 당사자의 抗辯에 대해 仲裁判定部가 자신의

5) 이러한 법률효과는 이미 ICC중재규칙 제8조 4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독일 관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BGHZ 53, 318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모델법에 따르면 先決問題로 또는 本案에 관한 仲裁判定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中間判定(Zwischenentschied)으로 재판하도록 하였다. 中間仲裁判定(Zwischenschiedsspruch)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本案에 관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仲裁判定部가 자신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先決問題로서 중간재판이나 本案에 관한 仲裁判定에서 재판할 수 없으며, 오로지 법원의 소송판결에 상응하는 訴訟仲裁判定(Prozeßschiedsspruch)에 의해 재판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취소절차에 의한다. 따라서 개정안 제1040조 3항은 仲裁判定部가 자신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간판정에 의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존의 연방대법원의 입장, 즉 당사자가 자율적 관할결정권에 관하여 중재계약의 유효여부에 상관없이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한 경우 仲裁判定部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따르지 않고, 仲裁判定部の 관할에 대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법원에 유보시킨 모델법에 따랐다.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전체중재절차가 무위로 끝나는 위험을 방지하는 면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仲裁判定部の 재판에 대한 심사는 취소절차에서가 아니라 중간판정 후 곧바로 법원의 절차에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지되기 힘든 관점이다.

(17) 모델법 제17조(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권한)

仲裁判定部に 의한 保全處分權限에 대해 개정안은 제1041조에서 모델법을 수용하여 현재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仲裁判定部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係爭物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내지 보전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仲裁判定部に 의한 보전처분과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모델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모델법에서는 仲裁判定部に 의한 보전처분(제17조)이 제9조에 의한 법원의 보전처분보다 그 적용범위에 있어 제한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내용은 독일법의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개정안에서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을 법원의 보전처분에 비해 제한할 필요는 없었다.⁶¹

仲裁判定部に 의한 보전처분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모델법은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국내법에 맡겨놓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재절차에 관한 제104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은 법원에 의해서만 집행선고될 수 있으며 이 집행선고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 때 법원은 중재합의의 유효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仲裁判定部の 처분명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집행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이미 법원에 상응하는 보전처분이 신청된 경우에는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에 대한 집행선고가 당연히 배제되는데, 이는 법원의 이중적인 사건심리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즉 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區法院이나 지방법원이,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에 대한 집행선고는 고등법원이 관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仲裁判定部に 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위원회의 논의 중에는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을 제한하여 仲裁判定部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을 구할 수 없을 때에만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개정안 역시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해 부수적인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법원은 仲裁判定部가 행한 처분사유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없어지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강제집행결정을 취소 내지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처음부터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仲裁判定部の 보전처분에 대해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청구권은 仲裁判定部の 명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중인 중재절차에서도 주장될 수 있다. 모델법은 손해배상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모델법 제17조 1항 2문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원래 표현된 “security for the costs of such measure”을 “appropriate security”로만 확장하였다.

(18) 모델법 제18조(당사자의 평등취급)

개정안은 중재절차에 관해 모델법을 많이 수용하여 제5장에서 상세히 규정

6) Calvros, Das UNCITRAL-Modellgesetz über die internationale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S. 101 f.

하고 있다. 소송절차의 중요한 원칙인 평등원칙에 관해서 개정안은 모델법 제18조의 내용을 제1042조 1항에서 審問請求權과 함께 규정하였다. 이 두 원칙은 중재절차 전반에 걸쳐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로써 중재절차가 법원의 소송절차와 同價值的인 권리보호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모델법은 UNCITRAL중재규칙과는 달리 대리인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각국의 입법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특히 국제중재절차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배제되어서는 안됨을 제1042조 2항에서 명시하였다.

(19) 모델법 제19조(중재절차규칙의 결정)

중재절차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에 관해서 개정안은 모델법 제19조를 받아들여 제1042조 3항과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법률상의 강행규정을 제외하고 중재절차에 관해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중재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강행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상 임의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仲裁判定部가 자유재량으로 중재절차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42조 4항에서 仲裁判定部가 증거방법의 適法性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여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영미법국가와의 차이 때문이다. 영미법국가에서는 당사자가 증인이나 감정인을 변론에 동반하여 법관이 증거주제에 대한 논리일관성을 事前에 심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이 독일법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20) 모델법 제20조(중재지)

중재지는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을 정할 때, 國內 또는 外國仲裁判定인지를 분류할 때, 그리고 법원의 관할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중재지의 결정에 대해 개정안은 모델법 제20조를 수용하여 제104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재지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지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자유재량에 따른다. 이 경우 중재인은 사안의 여러 상황들, 예컨대 당사자에게 적합한지의 여부, 중재인 자신의 요구 및 증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특히 국제중재절차에서는 절차지법에 따라 행해진 仲裁判定에 대해 엄두에 두고 있는 집행국에서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중재지와 별도로 仲裁判定部는 장소적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일정한 행위를 위해 적합한 장소에서 회합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이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증인, 감정인, 당사자에 대한 訊問과 仲裁判定部員간의 합의 및 사물의 검증 또는 서류열람 외에 口述辯論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점에서 모델법과 차이가 난다.

(21) 모델법 제21조(중재절차의 개시)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원고의 중재신청서를 피고가 수령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중재절차의 개시는 시효중단 외에 중재절차의 계속시점을 정하는데 중요하므로 개정안은 제1044조에서 모델법 제21조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개정안 제1044조가 신청서의 표시사항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모델법과 차이가 난다. 제1044조에서 신청서에 당사자의 표시, 係爭物의 지정 및 중재합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신청의 논리일관성을 위해서이며, 이러한 기재사항이 다 갖추어진 경우에만 중재절차개시의 효과가 인정된다.

(22) 모델법 제22조(공용어)

공용어는 국제중재절차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정안은 제1045조에서 모델법 제22조에 따라 공용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공용어의 선택은 우선적으로 당사자에게 일임되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仲裁判定部가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仲裁判定部는 계약체결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합의나 仲裁判定部에 의해 정해진 언어는 口述辯論,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면 그리고 仲裁判定部の 통지시에 기준이 된다. 仲裁判定部는 書證에 대해 공용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필요적 비용으로서 어느 당사자로 인해 번역이 필요했는지에 상관없이 재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용어로 작성된 내용을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모델법 제23조(仲裁訴狀과 答辯書)

仲裁訴狀의 기재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제104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모델법 제23조와 다른 것은 모델법에서는 仲裁訴狀에 爭點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청구와 청구원인사실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爭點의 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爭點은 訴에 대한 답변이 행해진 후에 비로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델법에서는 仲裁訴狀의 기재사항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留保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유보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청구와 청구원인사실은 모든 訴狀의 필요적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합의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046조 1항 후단에 따라 당사자는 訴狀이나 답변서와 함께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장래 필요한 증거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독일법이 증거방법의 표시를 당사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에서는 폭넓게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외국인당사자가 독일에서 중재절차를 할 경우를 염두에 두어 이를 당위규정(sollen)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증거방법의 표시에 대한 의무를 독일법에 비해 완화시킴으로써 중재절차의 촉진이 기여할 뿐 아니라, 제1048조 3항의 시기에 늦은 제출의 불이익효과와도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델법과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이를 더욱 완화하여 재량규정(모델법에서는 may, 보고서에서는 können)으로 하고 있다.

당사자는 仲裁判定部가 허용하면 중재절차계속 중 자신의 청구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 내지 보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모델법과는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 제296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기에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 충분히 변명하지 못한 경우 仲裁判定部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가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仲裁判定部가 그 적합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변경이 가능하다. 청구변경은 중재합의가 적용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反訴의 소송물이나 相計에 있어서도 自動債權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4) 모델법 제24조(심문과 서면심리)

개정안 제1047조는 모델법 제24조를 수용하여 口述辯論과 서면절차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문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중재절차에서는 口述辯論이 원칙은 아니다. 중재절차에서 서면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仲裁判定部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를 서면 또는 구술로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의 명백한 口述辯論排除의 합의가 없으면 仲裁判定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口述辯論을 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口述辯論의 배제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심문청구권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口述辯論을 실시할 수 있다.

적당한 단계에서 口述辯論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절차가 부분적으로는 구술에 의해 또 부분적으로는 서면에 의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仲裁判定部는 당사자에게 기일참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仲裁判定部가 계획하고 있는 口述辯論과 증거조사를 위한 모든 會습에 대해 당사자에게 適時에 통지하여야 한다.

(25) 모델법 제25조(일방당사자의 懈怠)

개정안 제1048조는 모델법 제25조에 따라 일방당사자의 懈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仲裁訴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仲裁判定部는 중재절차를 종료시키는데, 이 때 중재절차의 종료는 아직 訴狀이 제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仲裁判定의 형식이 아니라 개정안 제1056조 2항 1문(모델법 제32조 2항)에 따라 결정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UNCITRAL중재규칙 제28조 1항 1문은 이 경우 중재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仲裁訴狀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경우 仲裁判定部는 피고의 이러한 태도를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보지 않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원고나 피고가 口述辯論에 출석하지 않거나 仲裁判定部가 정한 기간내에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仲裁判定部는——쟁점에 대해서는 仲裁訴狀과 답변서에 의해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지금까지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仲裁判定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懈怠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변명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며,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懈怠의 효과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6) 모델법 제26조(仲裁判定부가 선정한 감정인)

개정안은 모델법 제26조에 따라 감정증거에 관해 제10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재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법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술문제나 商去來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감정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중재절차에서 감정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仲裁判定부는 1인 또는 數人の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仲裁判定부에 의한 감정인 선임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仲裁判定부에 대한 신임이 반드시 仲裁判定부가 선임한 감정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감정인의 선임에 따른 비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仲裁判定부에 의한 감정인 선임이 영미법체계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仲裁判定부에 의한 감정인 선임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仲裁判定부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에 의한 私鑑定人이 독일법에는 낯선 제도이기는 하지만 私鑑定人의 선임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모델법을 수용한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私鑑定人의 감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와의 밀접성 때문에 仲裁判定부가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과 똑같은 무게를 당연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仲裁判定부에 의해 선임된 감정인에 대해서는 중재인과 똑같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의해 기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3항에 의해 명확해진다. 기피에 관한 이 내용은 모델법에 없는 부분인데, 개정안에서는 당사자에 의한 私鑑定人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신 私鑑定人과 仲裁判定부에 의한 감정인을 그 기능상 구분하기 위해 3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항에 따라 행해진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감정인에 대한 불공정성의 주장은 仲裁判定의 취소절차나 집행선고절차를 통해 행해질 수 있다.

(27) 모델법 제27조(증거조사에서의 법원의 지원)

仲裁判定部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지원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050조는 모델법 제27조와 그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모델법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해서만 법원의 지원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보다 나아가 법원의 지원을 증거조사뿐 아니라 다른 행위(예컨대 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공무원에게 요청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송달과 公示送達을 구하는 경우, 공무원과 법관의 심문을 위해 진술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고 있다. 법원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026조는 중재절차에 대해 법원의 영향력이 과대해지는 것을 막아 중재절차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원의 지원까지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모델법 제정시에는 仲裁判定部に 대해서만 아니면 당사자에게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모델법에서는 결국 이들의 타협안으로서 양자에게 모두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도 仲裁判定部の 동의를 얻어 법원에 대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50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 증거신청과 관련하여, 仲裁判定部는 당사자의 절차지연의도를 막기 위해 證明主題가 자신의 재판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을 배제할 수 있다.

법원에 대해 신청이 행해진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법원의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즉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 신청을 해결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이러한 내용은 모델법에 없는 것인데, 이는 법원이 不適法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방식, 예컨대 미국식의 discovery에 대한 신청을 법원이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재인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모델법과 차이가 난다. 개정안에서처럼 중재인이 직접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28) 모델법 제28조(準據法)

어느 실체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가는 국제중재절차에서 특히 중

요하다. 仲裁判定部는 당사자가 분쟁의 내용에 적용하려고 합의한 법규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지시한 특정국가의 법이나 법규정은 당해국가의 實體法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적용할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은 제1051조에서 仲裁判定部로 하여금 本契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모델법(제28조 2항)은 仲裁判定部가 적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抵觸法이 정하는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적용할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중재인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本契約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實體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정안에서 本契約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명시한 것은 결국 중재인의 裁量이 恣意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원이 항상 實體法에 구속되어 재판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仲裁判定部는 당사자의 명백한 수권이 있는 경우 衡平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衡平에 의한 재판은 국제중재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형평에 의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중재절차에서도 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원칙이며 형평에 의한 재판은 예외임을 알 수 있다.

모델법 제28조 4항을 수용한 개정안 제1051조 4항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자칫 계약규정이나 商慣習이 법규보다 우선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仲裁判定部の 형평에 의한 재판을 합의한 경우에 이 규정이 가지는 독자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9) 모델법 제29조(仲裁判정의 성립)

개정안 제1052조는 모델법 제29조에 따라 多數의 중재인에 의한 仲裁判定部の 재판은 多數決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결과가 可否同數인 경우는 중재절차가 종료된다.

개정안은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可否同數인 경우 의장중재인의 투표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스위스법이나 ICC중재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당사자는 언제

든지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개정안은 중재인 중 1인이 투표권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델법에 없는 내용이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나머지 중재인이 절대다수를 형성할 수 있으면 이들만으로 재판할 수 있다.

당사자나 仲裁判定部の 구성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은 개별적인 절차문제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의장중재인은 내부적인 소송절차에 관해, 예컨대 구술 또는 서면절차에 대한 판단, 공용어에 대한 재판 및 감정인의 사용여부에 대한 재판 등을 혼자서 판단할 수 있다. 의장중재인이 그 직무의 본질상 행할 수 있는 외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판단, 예컨대 기일 지정이나 증인신문순서 등은 당연히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 105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델법과는 달리 개정안이 명시적으로 의장중재인의 단독재판권을 개별적인 절차문제에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仲裁判定部の 거의 모든 재판이 중재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규상 의장중재인의 단독재판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장중재인의 단독재판권은 소송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한다.

(30) 모델법 제30조(분쟁의 해결)

중재화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개정안 제1053조 1, 2항은 모델법 제30조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델법이 仲裁判定部の 화해조서 작성거부가능성과 관련하여 제30조 1항에서 仲裁判定部 스스로 반대하지 않으면 和解判定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화해가 公序良俗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재인으로 하여금 강행법규에 반하는 仲裁判定의 선고를 강요당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3항과 4항에서 모델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화해판정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仲裁判定의 내용으로서 작성되면 이로써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으로서의 공증을 대신하게 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和解判定은 공증인에 의해서도 집행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辯護

士和解에 적용되는 내용을 중재법에서 수용한 것인데, 법원의 업무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증인은 화해의 내용이 公序良俗에 반하는 경우 집행선고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31) 모델법 제31조(仲裁判定의 방식과 내용)

개정안은 仲裁判定의 방식과 관련하여 국제중재에서의 요청을 고려하여 모델법 제31조를 받아들여 현행법에 비해 방식의 요건을 현저히 완화하였다.

仲裁判定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제1054조1항에서 仲裁判定部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서명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형태로 仲裁判定部가 구성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중재인의 서명거부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논란이 있었으나⁷⁾ 이제 개정안에 따라 의장중재인의 서명거부도 가능해진다.

서명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과반수 이상 서명을 요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개정안 제1054조는 제1052조와 차이가 나는데, 제1054조에서는 仲裁判定部の 재판을 원칙적으로 다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仲裁判定에는 원칙적으로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仲裁判定文에 중재인의 少數意見(dissenting opinion)이 첨부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견이다.⁸⁾

仲裁判定文에는 仲裁判定의 선고일 및 중재지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데, 특히 개정안이 모델법에 따라 屬地主義原則(Territorialitätsprinzip)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지의 기재는 특히 중요하다. 개정안에서는 仲裁判定文에 기재된 날과 장소에서 仲裁判定이 선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모델법(제31조)은 이러한 假定을 중재절차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仲裁判定의 선고일

7) 긍정하는 견해로는 Sandrock RIW Beiilage 2 zu Heft 5/1987, S. 4 f. 반대하는 견해로는 Lörcher, BB 1988, S. 75 f.

8) 대표적으로 Schlosser, Internationale private Schiedsgerichtsbarkeit, 2. Aufl., Rdnr. 691. Calavinos, Das UNCITRAL-Modellgesetz über die internationale Handelschiedsgerichtsbarkeit, S. 139.

이 判定文에 기재된 날과 실제로 다를 때에는 翻覆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仲裁判定선고일을 확정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선고일 역시 仲裁判定文에 기재된 대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 당사자에게는 중재인이 서명한 仲裁判定文이 송부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송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우편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형식적인 송달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특히 국제중재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외국으로의 송달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2) 모델법 제32조(중재절차의 종료)

중재절차의 종료사유에 대해 개정안은 제1056조에서 모델법 제32조에 상응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절차는 仲裁判定에 의하거나 仲裁判定部の 절차종료결정에 의해 종료된다. 仲裁判定部の 종료결정은 원고에게 종료사유가 있는 경우(원고가 충분한 변명 없이 訴를 제기하지 않거나 訴를 취하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절차종료를 합의한 경우 내지 당사자가 仲裁判定部の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에 의해 중재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한 경우(예컨대 중재합의가 취소 등에 의해 소멸하거나 仲裁判定에 대한 투표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등)에 행해진다.

(33) 모델법 제33조(仲裁判定의 訂正과 해석, 追加判定)

개정안 제1058조는 모델법 제33조를 수용하여 仲裁判定의 訂正과 해석, 그리고 追加判定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仲裁判定의 訂正과 추가판정은 인정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판결의 訂正과 추가판결에 대한 규정이 중재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仲裁判定의 해석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법적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모델법에 따라 해석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仲裁判定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진다면 취소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仲裁判定의 訂正, 해석과 추가판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데 訂正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仲裁判定部の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과 모델법은 모델법이 仲裁判定의 해석과 추가판정의 신청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仲裁判定의 訂正과 해석에 대한 仲裁判定은 독립된 仲裁判定이 아니며 본래의 仲裁判定의 구성부분인데, 모델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해석에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訂正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추가판정은 종전의 仲裁判定에서 다루지 않았던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때문에 독립된 仲裁判定이며, 따라서 추가판정이 행해지면 종전의 仲裁判定은 일부판정이 되고 兩仲裁判定은 독립하여 집행선고될 수 있다.

(34) 모델법 제34조(仲裁判定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으로서의 취소신청)

仲裁判定의 취소에 관한 개정안 제1059조는 법원에 대해 취소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만 현행법과 일치하며 나머지 내용은 대체로 모델법 제34조를 수용하였다. 특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모델법의 내용을 따르고 있어 현행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단지 "不適法한 절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1059조 2항 1호에서 모델법과 같이 不適法한 절차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仲裁判定의 승인이나 집행이 公序良俗에 반하는 경우 仲裁判定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 경우 公序良俗 대신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기본법이라는 개념에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기본법은 당연히 公序良俗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公序良俗이라는 모델법상의 표현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델법과 몇몇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仲裁判定의 취소와 함께 사건을 仲裁判定部로 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은 仲裁判定部는 仲裁判定취소의 기준이 되었던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仲裁判定을 행해야 한다. 이에 반해 모델법은 仲裁判定取消節次를 일정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델법처럼 절차를 정지하는 것보다 仲

裁判定을 취소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仲裁判定에는 더 이상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仲裁判定部の 새로운 재판전에 취소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仲裁判定이 취소된 경우 의심스러울 때에는 중재합의가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모델법에 없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경우에 仲裁判定部の 재판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며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중재합의를 체결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이에 의하면 법원의 업무경감이라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종전의 仲裁判定部는 중재절차의 종료로 그 직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仲裁判定部를 구성해야 하는 당사자의 의무까지 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35) 모델법 제35조(仲裁判定의 승인과 집행)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에 관해 모델법은 국내 또는 외국의 仲裁判定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35조에서는 승인의 필요성과 집행선고의 형식적 요건을, 제36조에서는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外國仲裁判定의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UNÜE 1958이 기준이 되고(개정안 제1061조), 國內仲裁判定의 집행선고에 대해서는 仲裁判定取消事由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개정안 제1060조).

國內仲裁判定에 관한 개정안 제1060조는 모델법과는 달리 승인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집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仲裁判定의 강제집행은 仲裁判定에 대해 집행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집행선고신청은 仲裁判定 취소사유가 존재하면 仲裁判定의 취소와 함께 기각된다. 개정안은 현행법과는 달리 취소의 소에 대해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이는 國內仲裁判定의 경우 기간이 도과하면 집행선고절차에서 더 이상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반해 현행법에서는 취소신청에 대해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 집행선고절차에서도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外國仲裁判定에 대해서는 UNÜE 1958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제효가 인정될 수 없다.

직권에 의해 고려되는 취소사유의 경우 개정안은 期間排除效를 인정하지 않

고 집행선고절차에서도 항상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36) 모델법 제36조(仲裁判定의 승인과 집행거부사유)

外國仲裁判定의 승인과 집행에 대해 개정안은 UNÜE 1958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모델법에 따라 屬地主義原則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UNÜE 1958의 손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독일 국내에서 외국법에 따라 행해진 仲裁判定에 대해서는 UNÜE 1958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에서 행해진 모든 仲裁判定이 國內仲裁判定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독일법에 따라 행해진 仲裁判定은 外國仲裁判定이 되어 그 승인과 집행에 대해 UNÜE 1958이 적용된다.

IV. 독일 중재법의 독자성

독일 중재법은 모델법의 많은 영향을 받아 모델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독일 중재법만의 독자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우선 중재절차에서 법원의 절차와 관련하여 모델법은 제6조에서 관할의 집중을 권장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 上訴를 배제하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중재법 개정의 주된 목표가 법원절차의 간소화와 이를 통한 법원의 업무경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일차적인 관할권인정(제1062조)과 일원화된 決定節次의 도입(제1063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上訴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있다(제1065조). 개정안이 현행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이다.

개정안은 고등법원을 1심법원으로 하여 법원절차를 결정절차로 통일시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상소를 배제시켰다. 이로써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법치주의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업무를 현저히 경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의 업무가 가중될 것에 대한 우려는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관할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려는 개정안의 의도는 모델법뿐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의 최근 입법동향과도 일치하고 있다.⁹⁾

개정안은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재절차 중에 행해질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제1심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仲裁判定取消나 집행선고절차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고등법원의 관할에 관한 유일한 예외로서 개정안은 제1050조에서 증거조사 및 법원의 기타 행위에 대해 區法院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델법 제27조에서 증거조사를 가까운 곳에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상응한다.

개정안에서 법원의 모든 재판을 결정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비해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은 仲裁判定의 취소와 집행선고절차에서 口述辯論없이 재판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법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에 대한 특별항고는 재산법상의 분쟁에 있어서는 소송물가액 6,000 DM를 넘거나, 6,000 DM가 안되는 경우와 비재산법상의 분쟁은 고등법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특별항고가 가능하다. 이처럼 상소를 제한하고 있는 개정안의 태도는 중재인의 선임과 기피, 중재인의 직무종료 및 仲裁判定部の 관할위반 항변사유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상소를 배제하고 있는 모델법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단지 개정안은 모델법에 비해 仲裁判定部の 임시적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선고재판에 대해서도 상소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델법은 仲裁判定部가 자신이 관할권을 인정한 중간판단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항고의 요건만 갖추면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仲裁判定의 효력에 관한 개정안 제1055조는 모델법에 없는 내용이나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정안준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9) 스위스는 연방법원을 仲裁判定取消事件의 1審이자 最終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 국제사법 제191조), 프랑스는 고등법원이 抗訴 내지 無效抗告에 대해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86조, 제1502조, 제1505조), 스페인의 새로운 중재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88년 Ley de Arbitraje 제46조).

(3) 중재비용에 관해서는 다른 외국법과 마찬가지로 모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재비용이 중재절차의 終了에 중요하며, 또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제1057조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仲裁判定部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仲裁判定에서 중재비용부담에 관해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비용부담원칙을 중재절차에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단력적인 해결방안을 택하였다. 당사자가 부담해야할 구체적인 비용액에 대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사법보좌관제도가 있어 이들이 이를 정하지만 중재절차에서는 仲裁判定部가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에 관한 재판은 仲裁判定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 모 델 법 | 개 정 안 |
|-----------------------------------|-----------------------------------|
| 제 1 조(적용범위) | 제1025조(적용범위), 제1030조(중재적격성) |
| 제 2 조(개념정의와 해석원칙) | |
| 제 3 조(문서의 수령) | 제1028조(문서의 수령) |
| 제 4 조(책문권의 포기) | 제1027조(책문권의 상실) |
| 제 5 조(법원의 간섭범위) | 제1026조(법원의 활동범위) |
| 제 6 조(중재협조 및 감독기능을 위한 법원 및 기타 당국) | |
| 제 7 조(중재합의의 개념정의와 방식) | 제1029조(개념정의), 제1031조(중재합의의 방식) |
| 제 8 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직소) | 제1032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직소) |
| 제 9 조(중재합의와 법원의 임시적 조치) | 제1033조(중재합의와 법원의 임시적 조치) |
| 제10조(중재인의 수) | 제1034조(중재판정부의 구성) |
| 제11조(중재인의 선임) | 제1035조(중재인의 선임) |
| 제12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 제1036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
| 제13조(중재인의 기피 절차) | 제1037조(기피절차) |
| 제14조(중재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 제1038조(중재인의 직무불이행 또는 직무수행 불가능) |
| 제15조(중재인의 보궐) | 제1039조(보궐중재인의 선임) |
| 제16조(중재판정부의 자율적 관할 결정권) | 제1040조(중재판정부의 자율적 관할결정권) |
| 제17조(중재판정부의 보전처분권) | 제1041조(보전처분) |
| 제18조(당사자의 평등취급) | 제1042조(중재절차총칙규정) |
| 제19조(중재절차규칙의 결정) | 제1042조(중재절차총칙규정) |

| 모 델 법 | 개 정 인 |
|----------------------------------|-----------------------------------|
| 제20조(중재지) | 제1043조(중재지) |
| 제21조(중재절차의 개시) | 제1044조(중재절차의 개시) |
| 제22조(공용어) | 제1045조(공용어) |
| 제23조(중재소장과 답변서) | 제1046조(중재소장과 답변서) |
| 제24조(심문과 서면심리) | 제1047조(구술변론과 서면절차) |
| 제25조(일방당사자의 해태) | 제1048조(당사자일방의 해태) |
| 제26조(중재판정부가 선정된 감정인) | 제1049조(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임된 감정인) |
| 제27조(증거조사에 있어 법원의 지원) | 제1050조(증거조사에서 법원의 지원 및 기타 법원의 행위) |
| 제28조(증거법) | 제1051조(증거법) |
| 제29조(중재판정의 성립) | 제1052조(중재판정부의 협의에 의한 판정) |
| 제30조(당사자에 의한 분쟁해결) | 제1053조(화해) |
| 제31조(중재판정의 방식과 내용) | 제1054조(중재판정의 방식과 내용) |
| 제32조(중재절차의 종료) | 제1056조(중재절차의 종료) |
| 제33조(중재판정의 정정과 해석, 추가판정) | 제1058조(중재판정의 정정, 해석과 추가판정) |
| 제34조(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으로서의 취소신청) | 제1059조(취소신청) |
| 제35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제1060조(국내중재판정), 제1061조(외국중재판정) |
| 제36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거부사유) | 제1060조(국내중재판정), 제1061조(외국중재판정) |